

「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01일, 심현정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0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11월 0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심현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3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단서 상 점용료 면제기준 요금을 현실화하여 예산낭비를 없애고 업무담당자의 소액 연체관련 불필요한 부수업무를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600원”을 “2,000원”으로 개정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○ 「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

제3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단서 상 점용료 면제기준인 600원은 1997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

현재 보통우표 가격 380원 및 미납 시

여러 차례 독촉장 발부 우편 요금을 산정해 볼 때

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초래하므로

현실에 맞는 면제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
- 제3조제1항 단서 중 “600원”을 “2,000원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
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